

# 제 안 요 청 서

용역명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연구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2024. 2.

국 토 교 통 부  
첨 단 물 류 과

# 목 차

I. 과업지시서 .....	1
II. 제안요청내용 .....	12
III. 제안서 일반사항 .....	13
1. 입찰 참가자격 .....	14
2. 사업자 선정방식 .....	14
3. 평가 및 협상기준 .....	15
4. 제안서 서식 및 작성요령 .....	15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16
6. 제안서 설명 .....	17
[별지 서식] .....	21~33

# I. 과업지시서

---

##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연구

### 나.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화물관련 업계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휴게 및 주차공간 등 휴게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2003년 5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를 계기로 정부와 화물운송업계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대 및 시설·서비스 개선에 합의
  - 최근 화물자동차의 도로나 주택가 등 불법주차와 밤샘 주차로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있어 주차난 해소와 시민의 안전 보장이 필요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 원활한 화물 운송 도모 등을 위해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함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 정부에서는 '05년 「화물차 휴게소 확충계획」, '09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중장기 확충계획('09~'14)」, '14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종합계획('15~'19)」, '19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4)」 네 차례에 걸쳐 화물차 휴게시설 계획을 수립
- 이에,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25년 ~ '29년 기간 동안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 휴게시설 개발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하여 수요기반의 휴게시설 공급과 개발체계 정립

- 지역별,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개발 방안 도출
- 원활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성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 다. 과업 범위

### 1) 시간적 범위

- 각종 통계 등 기초자료는 2023년 말 기준으로 활용하되, 자료 수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최신 자료를 활용
- 중장기 확충계획의 경우 향후 5년을 기준으로 단기(5년 이내)와 중장기(5년 이후)로 구분하여 제시

### 2) 지역적 범위

- 기본적으로 국내를 대상으로 하되, 화물 물동량과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이 유출입하거나 경유하는 지역 대상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분석 대상에 포함

### 3) 내용적 범위

- 기존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계획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현황 및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연도별·지역별 배치에 관한 사항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기능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등

## 라. 과업 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12.31까지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마. 예산 : 8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물류산업지원 - 정책연구비(4034-309-260-02)

## 2. 과업의 내용

### 1) 기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기 수립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대비 추진실적
- 성과평가 및 추진상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기존 계획과의 차별성 도출

### 2)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현황 및 화물 유발시설 분석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운영 현황 및 실태 분석
- 화물자동차의 운행 및 통행실태 분석
  - 품목별, 톤급별 화물자동차 운행특성, 근무여건 등 운행실태 분석
  - 화물자동차의 도로이용(고속도로, 국도 등) 특성 분석

- 국내 주요 물류시설 현황 및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
  - 물류시설, 산업단지, 항만 등 화물 유발시설 현황 및 건설계획

### 3)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장래수요 예측

- 도로화물 물동량 현황 및 예측
  - 주요 품목별 발생량 및 도착량 기준으로 대상지역 검토
- 화물자동차 교통량 현황 및 예측
  - 톤급별 교통량의 발생량 및 도착량 기준으로 대상지역 검토
  -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유형별 주요 도로의 화물자동차 교통량 분석

### 4)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계획적 공급 및 연도별·지역별 배치 계획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개발 후보지역 선정
  - 지자체 및 민간 휴게소 사업자 수요, 지역여건(휴게시설 실태분석, 화물차 운행특성) 등을 토대로 휴게시설 개발 후보지역 선정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중장기 확충 방안 수립
  -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중장기 확충 방안 수립, 단계별(단기, 중장기) 배치 방안 수립 및 투자 우선순위 제시
  - 도로변(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 유발시설 등에서의 화물자동차 휴게 시설의 중장기 확충 방안 수립

### 5)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기능 개선 및 효율화 방안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기능 개선 방안 마련
  - 화물품목, 차종, 운행특성 등을 고려한 기능 개선 방안 마련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해외 제도·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방향 설정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관련 법령 개정(안) 제시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개발·공급 활성화를 지자체 유인방안 검토, 재정 지원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시

### 3. 과업수행지침

#### 가. 일반사항

-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과업일정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일정 계획에 의거 매 익월 5일까지 전월까지의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연구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 용역수행상의 인건비 및 경비는 계약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과업시행과정에서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과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계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과업수행 중에 세미나·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사업수행자가 공동 소유하되, 발주기관이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배포·제작·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나. 세부사항

- 용역수행 중 연구내용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위탁기관, 연구내용과 범위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용역수행 중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연구진행에 대해 발주처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용역 책임자와 각 부문별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처의 수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 용어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하여 한문영문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용어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어의 정의를 하여야 한다.
-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준공 시 전부 납품해야 하고, 성과품을 추가 인쇄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 다. 설계변경 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라. 기타사항

- “직접인건비” 및 “제경비”는 실제 투입한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종료 10일전까지는 집행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조정하되 조정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다.

### 4. 보안대책

- 가. 본 업무수행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고 정규직 외 참여는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신규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 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진행과정에서 생성되는 회의자료 등에 대하여 보안유지를 위하여 제한발행 및 배포선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과실로 외부에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시 참석자(또는 수령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기타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성과품 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 인쇄 시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
  - 2)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하고 원지, 폐지 등을 완전 회수 및 소각
  - 3) 납품수량 외 추가발행 금지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업무 성과품은 준공시 발주처에 전부 납품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 2)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 업무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예정공정표

과업내용	개월수	비율 (%)	1	2	3	4	5	6	7	8	9	10
			1. 기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계획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분석	10	5	5						
2.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현황 및 화물 유발시설 분석	15	5	5	5								
3.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장래수요 예측	30			10	10	10						
4. 제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계획적 공급 및 연도별·지역별 배치계획	20					5	5	5	5			
5.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기능 개선 및 효율화 방안	15								5	5	5	
6. 각종 회의 및 보고서 작성	10	2					2				2	4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합 계(%)	100	12	10	15	10	17	5	10	10	7	4	
누 계(%)	100	12	22	37	47	64	69	79	89	96	100	

※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수급자와 협의하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II. 제안 요청내용

---

### 1. 기존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계획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기 수립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종합계획」 대비 추진실적
- 성과평가 및 추진상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기존 계획과의 차별성 도출

### 2.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현황 및 화물 유발시설 분석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운영 현황 및 실태 분석
- 화물자동차의 운행 및 통행실태 분석
  - 품목별, 톤급별 화물자동차 운행특성, 근무여건 등 운행실태 분석
  - 화물자동차의 도로이용(고속도로, 국도 등) 특성 분석
- 국내 주요 물류시설 현황 및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
  - 물류시설, 산업단지, 항만 등 화물 유발시설 현황 및 건설계획

### 3.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장래수요 예측

- 도로화물 물동량 현황 및 예측
  - 주요 품목별 발생량 및 도착량 기준으로 대상지역 검토
- 화물자동차 교통량 현황 및 예측
  - 톤급별 교통량의 발생량 및 도착량 기준으로 대상지역 검토
  -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유형별 주요 도로의 화물자동차 교통량 분석

### 4.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계획적 공급 및 연도별·지역별 배치 계획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개발 후보지역 선정

- 지자체 및 민간 휴게소 사업자 수요, 지역여건(휴게시설 실태분석, 화물차 운행특성) 등을 토대로 휴게시설 개발 후보지역 선정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중장기 확충 방안 수립

-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중장기 확충 방안 수립, 단계별(단기, 중장기) 배치 방안 수립 및 투자 우선순위 제시
- 도로변(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 유발시설 등에서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중장기 확충 방안 수립

## 5.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기능 개선 및 효율화 방안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기능 개선 방안 마련

- 화물품목, 차종, 운행특성 등을 고려한 기능 개선 방안 마련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해외 제도·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방향 설정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관련 법령 개정(안) 제시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개발·공급 활성화를 지자체 유인방안 검토, 재정지원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시

### Ⅲ. 제안서 일반사항

#### 1.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1억원 미만인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입찰 참가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2.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 나.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 평가(80%) + 입찰가격 평가(2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 고득점 순에 따라 가격 협상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

### 3. 평가 및 협상기준

#### 가. 평가기준 및 방법

##### ○ 기술평가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제안기관 일반현황 (20)	기관평가 (20)	- 연구인력(석, 박사 등) 보유인력	20	계량평가
과업수행 부 분 (80)	제안서 개 요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의 범위 및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이해	5	비계량 평 가
	과 업 접근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 유사 연구용역과의 중복 및 병행 가능성	30	"
	과 업 수행계획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30	"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5	"
	연구조직 구 성	- 수행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적절성	5	"
	기 타	-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5	"
계			100	

※ 계량평가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 관련 연구인력 보유수(20점)

구 분	연구인력 보유수				
	10인 이상	8인 이상 10인 미만	6인 이상 8인 미만	4인 이상 6인 미만	4인 미만
점 수	20.0	18.5	17.0	15.5	14.0

\* 물류, 교통, 도시, 경제 등 관련 전공 석·박사급 연구인력 보유수

※ 비계량평가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구 분		배점 (A)	평가정도				
			매우우수 (점수=A×1)	우수 (점수=A×0.8 )	보통 (점수=A×0.6 )	다소 미흡 (점수=A×0.4 )	미흡 (점수=A×0.2 )
과업수행 부 분	제안서 개요	5	5	4	3	2	1
	과업 접근방법	30	30	25	20	15	10
	수행계획	30	30	25	20	15	10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5	5	4	3	2	1
	연구조직 구성	5	5	4	3	2	1
	기 타	5	5	4	3	2	1

- 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나. 협상방법

○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대상 순위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업체를 선정 후 협상에 의

하여 낙찰자를 결정

-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순으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한다.

○ 협상절차 및 내용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4. 제안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가.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용지, 표지포함 20매 이내 아래한글로 작성하며,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파일 제출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도록 작성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으로 제출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 및 증빙자료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나. 제안서 작성요령

### ○ 제안서 구성

구 분	작 성 지 침	비 고
1. 표 지	○ 과업제안서	서식 제1호
2. 제안서 내용	○ 제안서 개요 ○ 과업접근방식, 과업수행계획,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연구조직 구성 등	-
3. 일반현황	○ 업체(기관) 일반현황	서식 제2호
	○ 관련 연구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3호
	○ 본 과업 참여 연구인력 현황	서식 제4호
4. 기 타	○ 합의 각서	서식 제5호
	○ 청렴계약서	서식 제6호
	○ 보안서약서	서식 제7호
5. 별첨자료	○ 증빙자료	-

## 다. 제안 유의사항

- 제안내용 보장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다만, 발주기관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조건

- 제안사업자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는 경우 그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비용부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한 비용은 제안사업자가 부담

○ 제안서 설명

- 제안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 저작권

-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자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제안서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국토교통부는 이를 사용할 수 있음
-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타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 저작권 침해 시 국토교통부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기타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 제안요청한 내용의 추가·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연구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에는 국토교통부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프로젝트 책임자(PM) 등 주요 용역수행인력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요 용역수행인력을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변경하여야 함
- 제안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대여·제공받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제반자료는 본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의 허락 없이 공개할 수 없음
- 용역수행자는 검수과정에서 발주자가 용역수행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불량 부분으로 간주하여 전체 용역에서 차지하는 해당 불량부분의 비율에 따라 용역대가를 감액할 수 있음

#### 라. 제출서류 및 문의사항 연락처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044-201-4009, 4010)
- 입찰·계약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044-201-3186)

###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가.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따름

#### 나. 유의사항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파일 제출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과 업체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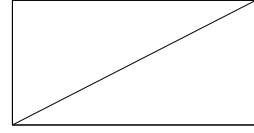
#### 다. 제출기한

- 제 출 처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파일 제출
-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 6. 제안서 설명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제안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음(필요시 별도 통보)
  - 제안 설명회 개최 시 제안서 설명은 PPT를 작성하되, 분량은 30페이지 이내로 함
-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신하며, 제안 설명에 사용하는 장비는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여야함

<서식 제1호>



# 과업제안서

용역명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계획 연구

기관명 : (인)



<서식 제2호>

##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분야			
4. 주 소			
5.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예산규모	2021년	2022년	2023년
9. 상시 종업원수			
10.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서식 제3호>

### 관련 연구인력 보유 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본 과업 참여 연구인력 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공 동 연구원					
연 구 보조원					
보조원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박사학위 소지자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4년 월 일
입찰건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몇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양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

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음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